

운 영 규 정 개 요

- **입소정원 : 80명**
- **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: 시설급여**
- **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**

1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
-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추가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③ 입소자가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.

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·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

-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,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○ **계약목적** :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**계약기간** :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및 비용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한다.

○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(보호자)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- ②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③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- ③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
- ④ 입소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
-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(장기요양기관)의 시설생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
-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 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
- ⑦ 계약의 해지등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

○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 단, 입소자가 계약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
- 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
- 3.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4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
- 5.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6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7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8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9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10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외박비용 산정기간 종료시

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

제19조 (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)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- ①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- ④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2.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진료에 관한 사항

-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- ②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)를 취한다.
- ③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④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 진료 후 촉탁진료비 및 약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3.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- ①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악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 감염자나 감염위험자는 보호자안내 후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,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즉시 병원으로 전원한다.
-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 - 가.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 - 나.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 - 다.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 - 가.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 - 나.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-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 - 가.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 - 나.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(정기, 수시)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.
 - 다.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.

4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-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-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5.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① 병원입원등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한다.